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62
----------	-----

2022. 3. 10.
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3. 4. 이호귀 의원 등 7명

나. 상정의결

-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3. 10.)  
“ 원안가결 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구의원 : 이호귀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 개정으로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중 ‘행정국(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, 동 주민센터 포함) 소관에 관한 사항’을 ‘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, ‘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, ‘행정국(동 주민센터 포함)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으로 변경함(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).
- 신설되는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신설).

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2022. 1. 27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인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**보좌기관**으로 설치하는 <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이 지난 제300회 임시회(2022.2.)에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.
-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하여야 하는 바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의 주요업무는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**안전교통국** 소관 업무<sup>1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39조에 따른 **재난안전과** 소관 업무<sup>2)</sup>를 고려해 유사업무를 소관하는 **복지도시위원회**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

#### 1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11조(안전교통국에 두는 과) ① **안전교통국**에는 **재난안전과**, 교통행정과, 주차관리과, 자동차민원과, 건설관리과, 도로관리과, 치수과를 둔다.

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안전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
2.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, 선진 안전문화 운동 추진,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, 재난대비동원자원과 재난관련시스템 관리,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, 민방위 편성·훈련·교육·비상소집·시설, 사회복지무요원 관리, 을지연습, 총무계획, u-강남 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·성능개선 사업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2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
제39조(재난안전과)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
2. 안전문화운동, 안전공동체 육성 등 민·관협력에 관한 사항
3. 안전지수·안전지도·안전교육·교재개발과 보급,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4.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·운영
5.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·지원 업무
6. 각종 사고현황 등 분석 및 통계자료 관리
7.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등
8.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·운영
9.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국(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, 동 주민센터 포함)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은 **보좌기관**이고 행정국은 **보조기관**으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<sup>3)</sup>상 그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담조직인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을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임.

○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해당 법령에 따라 명확히 분리하고 행정기구로 **중대재해예방실**을 설치한 바 안전교통국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특성과 재난안전과와 밀접한 업무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**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**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#### 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10. 자율방재단·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자율방재협의회 운영
11.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및 3종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(FMS)총괄
12. 재난대비 동원자원 총괄
13. 안전관리자문단 운영
14.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
15. 위기관리매뉴얼 업무 총괄
16. 화재예방 및 소방관련 업무
17.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
18. 긴급복구 지원협력 종합계획 수립
19. 테러 및 지진·폭염·한파·가뭄 관련 업무
20. 재난관리기금 관리
21. 그 밖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이외의 사항

#### 3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**보조기관**”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.
9. “**보좌기관**”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.

**6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호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4.

발의자 : 이호귀·김영권·이재민·  
김형대·김진홍·이향숙·  
복진경(이상7인)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 개정으로 ‘중대 재해예방실’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중 ‘행정국(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, 동 주민센터 포함) 소관에 관한 사항’을 ‘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, ‘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, ‘행정국(동 주민센터 포함) 소관에 속하는 사항’으로 변경함(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).

나. 신설되는 ‘중대재해예방실’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5조제1항제2호다목(중전의 가목) 중 “행정국(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, 동 주민센터 포함)”을 “행정국(동 주민센터 포함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재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행정국(정책홍보실, 감사담당관, 동주민센터 포함)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~ 바. (생략)</u></p> <p>3. 복지도시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~ 다. (생략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행정국(동주민센터 포함)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~ 아. (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)</u>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~ 라. (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